

위 임 장

수 임 인 (대리인)	성 명	
	주 소	

위의 사람을 본인의 대리인으로 정하여 **공증인 황순현 사무소** 에서 「공증인법」 제56조의2(어음·수표의 공증 등)에 의한 공정증서에 대한 자기계약 및 쌍방대리를 승낙하고 다음 어음의 금원지급을 연체할 경우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받아도 이의없다는 취지내용의 공정증서 작성, 촉탁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합니다.

금 액	금	원정
발 행 일		발 행 지
지급기일		발 행 인
지 급 지		수 취 인
지급장소		

* 인감증명서(3개월 이내) 첨부 년 월 일

위 임 인	성명 주소	인감날인
위 임 인	성명 주소	인감날인
위 임 인	성명 주소	인감날인
위 임 인	성명 주소	인감날인